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417

제출년월일 : 1994. 1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 안 이 유

-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양곡가공업을 희망하는 도민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
 - ①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 - ②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
 - ③ 등 업무를 시장, 군수, 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

□ 불 임

- 개 정 조 례 안 별첨
-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첨
- 관 계 법 령 별첨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조 별첨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1) 권한위임중 농산과 소관 제13호 다음에 제14호 내지 제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농산과	14	양곡가공업시설의 등록	양곡관리법 제19조
	15	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 · 임대 · 변경신고,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	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동법시행령 기준
	16	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 의정지 등록의 취소	양곡관리법 제21조 제1항
	17	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자 등에 대한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	양곡관리법 제36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